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48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2019.7.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6급)이 명시된 우리 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개정내용 : 용어변경

현 행	개 정
- 장애등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6급 - 등급외 -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	-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 장애인 - 장애미해당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joju03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1급~6급)**”을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이용자의 자격)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생략) 4.<u>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1급~6급)을 말한다</u> 5.(생략)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이용자의 자격) ----- ----- ----- ----- ----- 1.~3.(현행과 같음) 4. <u>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u> 5.(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u>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 금액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과태료 감경) ----- ----- ----- ----- -----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 -----

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